

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(8·9급)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1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○ 2021. 6. 5.(토) 10:00 ~ 11:40 (100분)

※ 장애 편의지원(시간연장) 대상자 : 1.5배 10:00~12:30 (150분) / 1.7배 10:00~12:50 (170분)

※ 시험장 출입은 08:00부터 가능하며 09:20까지 입실

2 시험장소

○ [붙임1] '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' 참조

※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(이외의 장소에서는 시험응시 불가)

3 응시자 유의사항

[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]

- **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**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**최소 1.5m 이상**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 내에서는 **항상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,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, 분실 또는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.

- 안전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본인의 건강상태, 출입국 이력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'자진신고시스템(<https://local.gosi.go.kr>)'을 2주간[5. 24.(월) ~ 6. 4.(금)] 운영 하오니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환자, 의사환자,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 통지서)를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.**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리고 아래의 신청기한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,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시험장소 및 방법 별도 통보)

<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안내 >

- 1) 신청기한 : **2021. 6. 4.(금) 18:00까지**
- 2) 제출서류
 - 확진자 : 응시 신청서[붙임5],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
 - 자가격리자 : 응시 신청서[붙임6], 외출허가 증빙서류
- 3) 신청방법: **전화 신청(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, ☎ 031-8008-4040) 후**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이메일(ggexam@korea.kr) 송부
 - ※ 시험장 준비, 시험문제 수송 등의 관계로 기한 내 사전신청 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
 - ※ 타 시·도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“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[붙임4]”에 따라 **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.
-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시험실별 퇴실 가능 시간을 별도로 고지하고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기 증상 등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며,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반사항]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시험당일 오전 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)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**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표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: **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**
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**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입니다.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**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**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 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에 해당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)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**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(차량탑승 수험생은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 후 개별 출입)**
-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‘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’ 및 ‘자격증 가산점’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[2021. 6. 5.(토) 09:00 ~ 2021. 6. 8.(화) 18:00]**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- **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)**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 소리, 습관적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 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계산·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- **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성명, 책형, 생년월일 등 필수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시험감독관 서명이 있어야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으며, 이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**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다만,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(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)

직급	직 렬	직 류	경기도 자체출제 과목	비 고
8급	보건진료	보건진료	공중보건 (1과목)	비공개
9급	농 업	축 산	가축사양, 가축육종 (2과목)	비공개
	녹 지	조 경	조경학,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(2과목)	비공개
	해양수산	일반수산	수산일반, 수산경영 (2과목)	비공개
	보 건	보 건	공중보건, 보건행정 (2과목)	비공개
	시 설	도시계획	도시계획개론, 토지이용계획 (2과목)	비공개
		디 자 인	디자인기획론, 공공디자인행정론 (2과목)	비공개
방송통신	통신기술	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 (2과목)	비공개	

※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
-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>

- 정답가안 공개 : 2021. 6. 5.(토) 14:00
- 이의 제기기간 : 2021. 6. 5.(토) 18:00 ~ 6. 8.(화) 18:00
- 최종정답 공개 : 2021. 6. 14.(월) 18:00
- ※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 → 시험문제 / 정답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-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.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,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
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
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)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)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(수정테이프 등)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▶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

- 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

-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**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: 2021. 6. 5.(토) 09:00 ~ 6. 8.(화) 18:00 (기간 중 24시간 등록가능)
 - 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가산자격증 등록
 - ※ **취업지원대상자**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, **의사상자**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확인
 - ※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안내는 [붙임 3] 자료 참조

5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

[적용 방법]

- 해당과목(**공고문상의 필기시험 과목명 기준**)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

$$\text{조정점수} = \left\{ \frac{(\text{응시자의 점수} - 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})}{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}} \right\} \times 10 + 50$$

- (**과락 기준**)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%이상일 경우(40점 이상)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 - ※ (예시) 사회 과목 : ① 원점수(35점), 조정점수(41점) ⇨ 과락 아님
 - ② 원점수(40점), 조정점수(37점) ⇨ 과락 아님
- (**가산점 부여시기**)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
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1. 7. 12.(월) 전·후에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 게시합니다.